

2023년 제15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Case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against Aristos and Repauld's Occupation of Aristos (Aristos v. Repauld)

사실관계

1. Aristos국과 Repauld국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한 국가이다. 그리고 양국 사이에는 ‘The Sea of Corang’이라 불리는 폐쇄해가 위치하고 있으며, 폐쇄해 남쪽에 존재하는 Corangd 해협을 통해 선박들이 양국의 주요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 The Sea of Corang 내에서 양국 해안 간 거리가 가장 긴 곳은 약 360해리에 이르나, Corangd 해협 내에서는 가장 폭이 넓은 곳도 약 17해리에 불과하다. Corangd 해협의 남쪽은 광대한 대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영해 및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참조\]](#)
2. Aristos국은 알파교(敎)도로 구성된 Cados족과 베타교(敎)도인 Depong족이 각각 전체 인구의 약 85퍼센트와 약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알파교도와 베타교도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현재도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Aristos국 내 Depong족은 Repauld국과의 국경 근처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매년 Repauld국 내 Depong족 축제가 열릴 때마다 기차 또는 버스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함께 축제를 즐기며, 민족의 단결을 과시하고 있다.
3. Repauld국은 Aristos국의 상황과 반대로 Cados족과 Depong족이 각각 인구의 약 5퍼센트와 약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Repauld국 내 Cados족은 Repauld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주요 항구도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4. 그런데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Repauld국은 최근 2~3년 동안 Aristos국 내에 살고 있는 Depong족이 Aristos국 정부로부터 유·무형의 박해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예를 들어, Aristos국에 비협조적인 Depong족 열혈 청년들이 시위 중 체포되었을 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즉시 처형을 당하거나 베타교도인 경우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 것 등)하며, Depong족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Aristos국을 향하여 소위 ‘인도적 간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강하게 보냈다.
5. Aristos국과 Repauld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이에 2022년 9월 17일

Corangd 해협을 항행하던 Aristos국의 유조선 1척을 Repauld국 해경이 나포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다만 그 유조선에는 유사 시 Aristos국의 유조선 보호를 위해 정책 상 해병 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Repauld국은 그 해병 3명을 포함하여 선원 전체에 대하여 Repauld국의 허가 없이 통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조선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해병 3명을 포함하여 선원 전체를 구금한 상태에서 국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ristos국은 적법한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 행사를 뿐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6. 종교의 자유를 넘어 ‘인종차별 종식’을 쟁취하고자 Aristos국 내에 살고 있는 Depong족 중 일부는 무장단체 ‘United Arms’를 만들어 간헐적으로 Aristos국 정부 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만약 Aristos국이 시위 중 체포된 Depong족 열혈 청년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처형을 지속할 경우 그리고 시위가 일어난 마을을 그 마을의 소멸을 목표로 Aristos국 정부군이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Aristos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Repauld국은 사용처와 사용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United Arms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사린가스 와 VX 신경작용제 등 화학무기를 United Arms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NGO에 의하면 United Arms가 사린가스를 실제로 교전 중에 사용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7. 2023년 1월 5일 United Arms는 Aristos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The UA’라는 국가의 수립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8. 2023년 1월 6일 Repauld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The UA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The UA를 국가로 승인하였다.

9. 이에 Aristos국은 The UA는 반정부 무장단체에 불과하며, Aristos국이 Aristos국의 전 영토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다.

10. 2023년 1월 22일 Repauld국은 The UA와 일방의 요청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11. The UA는 Aristos국 정부군과의 교전을 Aristos국의 ‘침공’으로 간주하였고, 2023년 1월 29일 Repauld국은 The UA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용하며, Aristos국과의 국경을 넘어 The UA에 적대적인 Aristos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육·해·공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다만 Repauld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1개국과 여러 이슈에 대하여 철저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그 상임이사국은 Repauld국을 비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

되는 것을 확고히 막고 있다.

12.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Repauld국은 The UA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Aristos국 쪽으로 진격에 성공하여 현재 기존 Aristos국 전체 영토의 약 1/2을 점령 중이다.

13. Repauld국은 ‘전시점령’을 선언하며 점령 중인 Aristos국 영토에 군정청을 설치하였다. 군정청은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였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 선포는 오히려 Cados족이 Aristos국 헌법(Aristos국 헌법은 알파교를 국교라 선포하고 있고, 알파교 종교의식에 있어 여러 가지 특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통해 보장받고 있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14. 군정청은 점령 중인 영토에서 기존 특권을 주장하며 알파교 종교의식을 1주일 동안 계속하여 행하던 Cados족 청년들 100여 명을 제1호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하여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고자 시도하는 중이다.

15. 결국 Aristos국은 Repauld국과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양국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의 수락, 즉 선택조항 수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취지

① Repauld국의 소위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유엔 협정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② Repauld국이 적법한 통과통항권을 행사하고 있던 Aristos국의 유조선에 타고 있던 해병 3명을 구금한 채 형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병 3명에게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통과통항권과 면제에 관한 국제법 원칙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③ Repauld국이 The UA를 국가로 승인한 것은 유엔 협정 제2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④ Repauld국이 설치한 군정청의 제1호 포고령 및 그러한 포고령의 적용은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또는 1949년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6. 평소 국제소송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던 Repauld국은 Aristos국의 제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7. Aristos국은 Repauld국 양국 모두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즉 선택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한 상태이다. 그리고 양국은 모두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1949년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다. 다만 Aristos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인데 반해, Repauld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끝.

[그림]

